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5월 10일

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○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

화물자동차 도심지 주택가 불법 주차 문제 개선 및 화물운수 종사자 주차 편의 증진, 원활한 화물 수송을 통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하고자 함.

○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

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에 대한 복지, 문화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고 낙후되고 취약한 환경을 새롭게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정주 여건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

- 위 치 : 임은동 5-3 외 10필지
 - 임은동 5-3, 5, 5-5, 28-3, 28-5, 산2-7, 산1-6, 산1-7, 산2-3, 5-4, 763-31
- 대 상 : 토지 45,566㎡(13,784평), 건물(관리동) 1식
- 사업기간 : 2021 ~ 2024년(4년간)
- 사 업 비 : 127억원(토지매입비 67억원, 공사비 60억원)
- 사업내용 : 주차대수 210대 정도(화물 150, 승용 60), 관리동 등
- 기준가격 : 토지 3,538백만원(공시지가)
건물 900백만원(건축비)

□ 옥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

- 위 치 : 옥성면 주아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
- 총사업비 : 3,970백만원(국비 2,779, 시비 1,191)
- 사업내용
 - 주아령활력센터조성 : 주아령활력센터(짬질방, 빨래방), 게이트볼장, 광장
 - 주아령동아리방조성 : 녹색농촌체험회관 리모델링, 주차장 조성
 - 주아령안전안길조성 : 행복쉼터, 무선방송시스템 1식
- 취득재산 상세내역
 - 〈주아령활력센터, 게이트볼장〉
 - 위 치 : 옥성면 주아리 142-3번지 외 5필지
 - 대 상
 - 토지 2,055㎡(약 622평)
 - 건물 지상1층, 연면적 376㎡(주아령활력센터)
 - 건물 지상1층, 연면적 530㎡(게이트볼장)

- 기준가격
 - 토지 62백만원 * 공시지가
 - 건물 1,043백만원(주아령활력센터 신축)
 - 건물 385백만원(게이트볼장 신축)

< 행복쉼터 >

- 위 치 : 옥성면 주아리 309-1번지 외 1필지
- 대 상 : 토지 737㎡(약 223평)
- 기준가격 : 39백만원 * 공시지가

라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 2021년도 공유재산 수시-3차 관리계획 대상은 「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」 등 2건임.

○ 「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」은

- 우리시가 내륙 최대의 수출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등록된 화물차가 4,000대에 육박하나, 공영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 화물운수종사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고,

- 화물자동차 도심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화물운수종사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며 원활한 화물 수송을 제고하여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○ 「옥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」 은

-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」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임.
- 옥성면 주아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약 40억원(국 28, 시 12)을 투입해 주아령활력센터 등 기초생활시설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며, 취득재산은 토지 8필지 2,792㎡와 건물 2개동임.
- 옥성면에는 행정시설 외에 주민 생활편의시설은 부족해 선산읍에서 교육, 상권,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으로, 면중심지 주민을 포함해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복지·문화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